

ESG 위원회 운영규칙



롯데정밀화학주식회사

ESG위원회 운영규칙

표준번호	B09PG-013
제정일자	2021.07.29
개정일자	-
개정번호	00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칙은 롯데정밀화학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ESG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또는 지속가능경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역할과 권한)

- 3.1 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내 지속가능성 내재화 및 주요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리스크 및 기회 사항을 관리한다.
- 3.2 위원회는 전사 ESG 추진사항에 대한 의사결정, ESG 전략에 따른 주요과제 추진성과 모니터링, ESG 기반의 사업 기회 극대화 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다.
- 3.3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 성)

- 4.1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사내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사외이사의 수가 총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2 위원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.
- 4.3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임 기)

- 5.1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5.2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.

제 6 조 (위원장)

- 6.1 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
- 6.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6.3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ESG위원회 운영규칙

표준번호	B09PG-013
제정일자	2021.07.29
개정일자	-
개정번호	00

제 3 장 회 의

제 7 조 (회의 종류)

- 7.1 정기 ESG위원회와 임시 ESG위원회로 한다.
- 7.2 정기 ESG위원회는 분기에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개최장소와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.
다만, 부의 및 보고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.
- 7.3 임시 ESG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소집권자)

- 8.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3항에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8.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9 조 (소집 절차)

- 9.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를 정하고 그 7일 전에 이를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9.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10 조 (결의 방법)

- 10.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,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10.2 결의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이 경우 참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 (부의 사항)

-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1.1 ESG경영을 위한 기본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
 - 11.2 ESG경영 중장기 목표 및 전략 수립
 - 11.3 ESG경영 활동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(성과)
 - 11.4 ESG 관련 중대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한 사항
 - 11.5 사업장 친환경 관련 정책·전략·계획의 수립 및 투자
 - 11.6 회사의 사내·외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사항
 - 11.7 주주가치 제고 및 ESG 관련 주요 공시와 관련한 사항
 - 11.8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(위원장)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ESG경영 사항

ESG위원회 운영규칙

표준번호	B09PG-013
제정일자	2021.07.29
개정일자	-
개정번호	00

제 12 조 (이사회와의 관계)

- 12.1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- 12.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2.2.1 이사회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 - 12.2.2 위원회 결의사항 중 이사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
- 12.3 이사회 부의 미대상 건은 위원회 심의로 종결한다.

제 13 조 (관계인의 출석 등)

- 13.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- 13.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의사록)

- 14.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14.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5 조 (보 고)

-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간 사)

- 16.1 위원회에는 간사를 따로 둘 수 있다.
- 16.2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.

제 17 조 (규칙의 개정)

- 17.1 이 규칙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
- 17.2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, 이사회 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